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4년 8월 23일
-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6일

3. 개정이유

- 2024년 7월 2일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맞추어 각종 특별휴가 기간을 변경.
-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(5년 이내)들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, 자기개발 및 재충전을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.
-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.

4. 주요내용

- 육아시간 사용 기간 개정(안 제14조제7항)
 - 24개월 → 36개월로 확대
- 새내기 도약 휴가 사용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4조제11항)
 - 5년 미만의 경우 연간 2일의 새내기 도약휴가 도입
-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 개정(별표 4)
 - 3일 → 5일

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(별표 4)

- 1일 →3일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맞추어 각종 특별휴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(안 제14조제7항),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(5년 이내)들의 공직이탈 방지 및 자기개발과 재충전을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를 연 2일씩 신설하고(안 제14조제11항),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기간을 3일에서 5일로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기간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임(별표 4)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에 규정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,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고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경조사시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